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제대혈관리및연구에관한법률
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조규홍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제대혈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「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이 개정(법률 제19958호, 2024.1.9. 공포, 2024.7.10. 시행)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제대혈위원회의 폐지(안 제3조, 제3조의2, 제4조부터 제7조 삭제)

현행 시행령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대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왔으나, 제대혈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사항(법 제6조 삭제)을 시행령에 반영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,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3조(제대혈위원회의 구성 등)</u> ① 법 제6조에 따른 제대혈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과 부위원장은 위 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.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	<u><삭 제></u>
<u>제3조의2(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)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 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 임하거나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</u> 1. <u>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u> 2. <u>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</u>	<u><삭 제></u>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4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
2.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의

<삭 제>

견을 들을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
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전문위원회)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④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제대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당 등의 지급) 보건복지

<삭 제>

<삭 제>

부장관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,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7조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<삭 제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635